韓國生藥報

本紙는 新聞倫理綱領및 實踐要綱을 遵守합니다.

發行人兼編輯人 宋景太
印刷人 金政坤
編輯局長 裵永斗

發行所
社團法人 韓國生藥協會
<우편번호130-06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051
☎967-8133, 969-6875
FAX : 965-0643

(毎月 初日發行)

<협會指針>
農民所得增大
生産輸出增大
國民保健向上

會長訓
1. 最大의 봉사
1. 最大의 협동
1. 最大의 노력

(無料配布)

中央共販場
☎967-4984
☎965-9551

中央 地方 分事務所規定 主要改定事項소개

근거 : 본회정관 제4조(사업소의 소재지)에 의거하여 각 시·도·구·군지역에 분사무소(지부, 사무소, 출장소)설치 운영.

목적 : ●관할지역의 회원및 생약생산농가의 재배지도및 판촉 업무에 대한 편의 제공.
●생약재 유통질서 확립유도및 농가소득증대도모.
●협회 전체 조직망에 대한 효율적 운영기여.

各級分事務所長 추천제 現實化

各級會費의 定總의결에 따른 現實化

※82년도에 시행중에 있는 分事務所規定과 회비납부액 증폭에 대하여 92년 제23次 定期總會에서 決定한바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지난 7월8일 今年度 제2차 理事會에서 改正키로 確定한 分事務所規定 主要骨字를 산하 全會員에게 周知시키고자 다음에 紹介하고자 한다.

○본규항 제2조 명칭사용에 대하여 : 현재까지 직할시및 도지부로 외형상 사용해왔으나 금번 현실적으로 제도화하였다.

○제4조=사무소설치위치에 대하여 : 행정관서 소재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통할이 용이한 장소 또는 물량집산지역등에 설치할 수 있는 가변성을 부여하였다(보회 정관별표에 의거).

○제7조=각급분사무소의 직능추가에 대하여 : 91년 2월이후 본회 정관상 기본기능에 추가된 생약안정기금의 관리 및 유통개선 항목을 본규정직능사항에 추가 삽입하였다.

○제8조=각급분사무소장 임명 및 승인에 대하여 : 직할시 및 도지부장의 임명은 중앙이사 2명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지부자체 총회등에서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은 추천서를 첨부하기로 개정하였다.

○제8조=각급분사무소장 임명및 승인신청시 구비서류에 대하여 :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신원보증서(재중보증) 제출을 삭제하였다.

○제12, 13조=중앙회원, 지방회원 구비서류에 대하여 : 본항 구비서류중 자필이력서 제출을 삭제하였다.

○제12조=중앙회원의 납부회비에 대하여 : 종전 월2천원(년2만4천원)을 3천원(50%)으로 인상하였다(제23차총회결정) ※(지방회원회비는 변동없음).

○제18조=회비장기체납자 조처에 대하여 : 현재까지는 협회당면 운영방침에는 기한내 납부완결을 종용하고 있었으나 규정상으로는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앞으로는 협회운영상 필요에 따라 6개월 체납자에게는 정관7조 및 본규정 9조의 적용을 받도록 개정하였다.

○제21조=각급분사무소 회비납부기한및 회비납부액에 대하여 : 직할시및 도지부는 공판장을 병행 설치하였을 경우는 5만원(종전과 변동없음) 단 공판장을 운영안할경우는 3만원으로 책정. 구·군사무소는 2만원으로 별도로 설치한 단독운영의 공판장회비는 4만원으로 각각 인상 개정하였다(92년 제23차 정기총회결의). 그리고 종전 분기별 납부기한을 매월25일까지로 변경 개정하였다.

○제22조=각급분사무소 관장업무에 대하여 : 본회 정관상 기능에 추가된 생약안정기금운영 관리 및 유통개선 조항을 관장하게 제도화 조치하므로서 장차 업무발전에 대비토록 하였다.

○제27조=각급분사무소자체 임용자에 대하여 : 현재까지는 채용시 신원보증서(재정보증)를 첨부하도록 되어있었으나 현실성 문제로 이를 삭제하였다.

○제30조=비치하여야 할 행정서류 및 보존년한에 대하여 : 세금계산서, 금전출납부 및 제증빙서류, 생약판매일선대장, 종묘·종자 일선대장, 생약출입고대장등 5개항에 대하여는 보존년한 10년을 각각 5년으로 단축개정하고 생약보 보존년한도 3년을 1년으로 단축하였다.

부칙 : 모든 운영은 92년 7월1일부로 소급적용하기로 하였다(편집부 제공).

連載 韓方순례 >34<

〈續〉

3、광대뼈의 건강경험방

위에서 말했듯이 관골은 체상학(體相學)에서도 중대한 요점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강의 진단으로 삼식을 넘는 예방의학적 가치가 있음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①순환경락의 수태양소장경(手太陽小腸經)은 비스듬이 관골부위와 연결되어 있다.

②관골은 뼈의 바탕이다. 광대뼈가 크면 모든 골격도 크다. 광대뼈가 작으면 모든 골격도 작으며 따라서 피부에 윤기가 없으며 살에는 지방질이 적고 팔꿈치는 부드럽고 기침이 없으며 바닥색은 선명하지 않고 위와 같은 색이 아니다.

③얼굴모양이 둥글면서 광대뼈가 솟아나지 않은 사람은 골격이 작다. 골격이 작으면 불행히 요절하기 쉽다.

④광대뼈는 어깨이다. 왜냐하면 관골은 골격의 바탕이기 때문에 이는 어깨에 대한다고 말할 수 있다.

⑤광대뼈의 뒤쪽은 팔꿈치이다. 팔꿈치는 어깨에 접해 있다. 광대뼈는 뒤쪽으로 팔꿈치에 반응을 나타낸다.

⑥광대뼈의 밑은 손이다. 광대뼈의 뒤쪽 아래는 손에 반응을 나타낸다. 손은 팔꿈치에 접해 있다.

⑦중앙은 대장이다. 중앙은 측면의 중심부를 말하는 것으로 즉, 영향혈(迎香穴)의 바로 바깥쪽인 관골의 중심부는 대장에 대응된다는 말이다.

⑧대장을 끼고 있는 것은 신장이다. 즉 대장에 상응하는 중심부위를 끼는 것은 관골의 옆부분으로 볼의 윗부분에 해당된다.

⑨심장의 표리는 배꼽이다.

⑩심장에 병이 있을 때는 볼이 붉고 신장에 병이 있으면 볼과 얼굴색이 검어진다.

⑪관골 부위가 번들번들해지면 열병이 징조이다.

⑫열병이면서 땀이 나지 않고 관골이 붉어지면서 구토하는 사람은 위험 신호를 받고 있다.

⑬붉은 색이 양쪽 관골부위에 나타나 그 크기가 엄지손가락 정도면 병세가 경증이라도 위험하다.

4、뼈와 살의 병증

골육상쟁이라는 말은 친족간의 싸움이나 또는 범위를 넓혀 동족간의 전쟁 등을 표현한 말이다.

즉 뼈와 살의 관계는 이반이 있을 수 없으며 만일 그런 상태가 나타난다면 공멸의 운명을 걷는다는 교훈적인 역사적 사례에서 유래했다. 이는 바로 인체의 건강상태를 점검할 때 쓰여질 수 있는 말이기도 한 것이다.

골육상친은 골격과 근육이 조화된 상태들의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일까?

그 기본적인 수칙 몇가지를 들어본다.

①족소음신경의 흐름이 나쁠 때 : 순환경락인 족소음신경의 기혈의 흐름이 나쁠 때 골격이 나빠진다. 이 순환경락은 골수를 윤활하게 만드는데 이 흐름에 이상이 생기면 신장과 뼈 및 골수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②살이 붉지 않을 경우 : 그렇기 때문에 뼈가 습윤하지 못할 때는 살이 뼈에 부착하는데 장애가 온다.

(祝)

發展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

◇ 충청북도지부

지부장 이지대 (진천군소장겸)
괴산군 사무소장 임재석
청주시 〃 우명규
단양군 〃 장지홍
제천시 〃 이광우 (도공판장겸직)
청원군 〃 최종운
제천군 〃 이한승
영동군 〃 김운호
보은군 〃 황상경
음성군 〃 연기흠
옥천군 〃 지필성
충주시 〃 이광우
청주시 공판장장 정진석
단양군 〃 신상섭

1992년 8월 20일 현재